



# 特色있는 中國 産業財産權制度에 대한 考察(2)



강 경 찬  
특허심판원 심판관

## 목 차

- I. 가까이 다가온 中國
- II. 中國을 알아야 하는 이유
- III. 中國의 産業財産權 현황
- IV. 中國 産業財産權 制度의 特色點**
- V. 맺는말

<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

## IV. 中國 産業財産權 制度의 特色 (우리 제도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毛澤東은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이후 봉건적 후진 사회인 중국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으로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등을 하였지만 치절한 실패를 맞이하게 되어 더욱 빈곤한 나라가 되었다. 상처투성이인 중국은 오뚝이 같은 鄧小平의 등장과 함께 “검은 고양이이던 흰고양이이던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이다”라는 실리정책에 힘입어 시장원리와 외국의 좋은 제도들을 과감히 도입·발전시켜 나갔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 강대국의 일원이 되었으며 미국에게 감히 “NO”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치, 경제, 국방 등 다방면에 있어 저력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외국의 제도를 도입할 때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중국의 문화 관습과 사회주의 체제에 맞는 특색있는 중국적 제도로 만들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허,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적 조류에 따르면서 중국적 관습이 가미된 특색있는 제도가 다수 있음을 볼 수 있다.

### 1. 韓 中間 使用되는 用語의 차이

특허와 상표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

의 용어를 다수 사용한 반면, 중국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중국적 용어들을 산업재산권 용어로 바꾸어 사용했기 때문에 관련용어들이 우리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知識產權”이라고 하며 그 안에는 “工業產權”과 “版權(저작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업산권』은 “專利權”과 “商標權”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전리권』은 “發明專利(특허)”, “實用新型專利(실용신안)”, “外觀設計專利(의장)”분리되는 등 용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 특허관련 용어 ]

中 國	韓 國
발명전리(發明專利)	특허
실용신형전리(實用新型專利)	실용신안
외관설계전리(外觀設計專利)	의장
신청(申請)	출원
권리요구서(權利要求書)	청구범위
현존기술(現存技術)	종래기술
초보심사(初步審査)	방식심사
전리수권공고(專利授權公告)	특허권등록공고
복심(復審)	심판
전리복심위원회(專利復審委員會)	(특허)심판원
철회(撤銷)	등록후 이의신청을 통한 취소
박회(駁回)	거절사정

[ 상표관련용어 ]

中 國	韓 國
신청(申請)	출원
초보심정(初步審定)	출원공고결정
핵준주책(核准注册)	등록사정
박회(駁回)	거절사정
평심(評審)	심판
상표평심위원회(商標評審委員會)	(상표)심판원
철회(撤銷)	등록후 이의신청을 통한 취소
쟁의(爭議)	무효심판(등록상표간분쟁)
속전(續展)	갱신등록
종서(終止)	소멸

2. 商標를 별도 부처에서 관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하나의 정부 부처에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을 함께 관장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지식산권국에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업무를 관장하고, 상표관련업무만은 별도로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내의 상표국에서 맡고 있다.

1) 知識產權局(局長 姜穎)

지식산권국은 1998. 4. 1 종전의 專利局이 확대 개편되어 특허(실용, 의장포함)출원, 심사,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대외업무연락 및 대외협약체결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의 여건을 감안하여 상표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등도 통합관리할 예정으로 있다. 직원수는 약 1,500명이고 그중 심사관수는 700명 정도이다.

2) 專利復審委員會

지식산권국 내에 전리복심위원회가 설치되어 ①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사건(재심청구) ② 지식산권국의 특허권 취소결정이나 유지결정에 불복사건(재심청구) ③ 무효심판청구사건 등을 처리한다. 전리복심위원회의 구성은 지식산권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식산권국장이 지칭하는 기술, 법률전문가가 위원이 된다.

3) 國家工商行政管理局 商標局(局長 백대하)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국무원 직속기구로써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각종경제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주요한 기능을 가진 곳이며 同국내에 1개 기관으로서 상표국이 있다. 상표국은 반독립적인 성격을 가진곳으로 전국의 상표등록과 관리를 주관하는 곳이며 종합처, 관리처, 출원처, 심사처, 상표등록처, 국제상표등록처, 검색



조희조 등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상표국의 직원수는 300명 정도이고 그 중 심사관은 70명정도로써 국제분류에 따라 개인별로 1~5개의 류를 맡아 심사를 하고 있다.

#### 4) 商標評審委員會

상표 평심위원회는 상표국 소속이 아니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상표평심 기구로서 그 기능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국에서 내린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쟁의가 있는 심사에 대한 평심(評審)을 하고 있다. 평심위원은 모두 9명이며 평심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장기 심사관 경력자중 평심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

주요업무는 ① 상표국의 거절사정과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에 대한 재심 ② 상표국에서 등록상표의 양도를 기각하거나 갱신을 거절한데 대한 불복신청서 재심 ③ 등록한지 1년이내의 상표에 대한 쟁의사건 ④ 상표의 부정한 등록으로 취소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재정 ⑤ 상표국의 등록상표철폐결정에 불복하는 사건에 대해 재심업무를 처리한다.

### 3. 地方人民政府의 적극적 商標管理

중앙부처가 중국전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관리업무를 모두 맡아 할 수 없으므로 전리법과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지식산업국, 상표국)는 등록업무(집중등록)를 위주로 하고 지방정부의 전리·상표관리기관은 지역내에서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관리, 지도하는 업무(분권관리)를 맡아 하고 있다.

#### 1) 地方專利管理機關

지방전리관리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각성, 자치구, 직할시, 개방도시, 경제 특구 및 중국과학원에 각각 전리관리국 또는 전리관리처가 설치되어있다.(현재 94개소 설치) 주요업무는 ① 각종 특허분쟁의 조정 및 처리(특허침해사건처리) ②

침해행위금지 및 손해배상명령의 권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민법원에 청구가능 ③ 특허출원, 허여계약 및 직무발명의 분쟁처리 ④ 특허사용료에 관한 분쟁, 발명자와 특허권자간의 이해관계조정 업무등이다.

同 기관의 설치배경은 ① 옛부터 행정기관에서의 민사분쟁처리를 해오던 관행이 이어진것이며 ② 특허소송으로 인해 재판소의 처리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고 ③ 기술에 대한 지식·경험이 있는 재판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 2) 地方工商行政管理機關

省·직할시·자치구공상행정관리국, 省이하 지구와 시·현공상행정관리국은 일반적으로 상표처 또는 상표국을 설치하여 상표관리의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책임지고 있다.

그 업무를 보면, ① 국내 상표의 등록, 양도, 변경, 갱신, 소멸등의 수속업무 및 확인업무 ② 상품의 품질을 감독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주는 업무 ③ 관찰지역내의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의 사용행위에 대한 일상관리 업무 ④ 상표의 인쇄에 대한 관리업무 ⑤ 국가에서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리 ⑥ 기업에 대한 상표법규의 지도·계몽 등이다.

지방공상행정관리기관은 특허관리기관과는 달리 침해자로 하여금 침해행위 중지조치, 손해배상을 하게 할 뿐 아니라 벌금부여 및 침해제품을 압수할 수 있는 경제 경찰관 기능을 한다. 전국 공상행정관리계통에는 대체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7,000여명의 상표관리 담당인원이 있다.

### 4. 외국인출원은 涉外代理機構(국무원지정)에서만 대리가능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는 국내사건 뿐 아니라 외국인 관련사건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 추세인데, 중국은 이와 달리 외국인의 출원이나 외국인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지정하는 대리기관만이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규화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출원시에는 중국의 섭외대리 기구에 위임을 시켜야 한다.

중국의 대사사무소 수는 514개소이며 전국 변리사 수는 6,000여명이다. 이 중에서 외국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국무원이 지정한 섭외대리기구는 11개이다.

즉,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전리상표대리부, 중국 전리대리유한공사, 상해전리상표사무소, 영신전리상표대리유한공사, 유심지식산권 법률사무소, 중원신달 지식산권 대리공사, 중과전리사무소, 용천전리공사, 화통전리사무소, 중국상표사무소 등이 있으며 최근에 신설된 북경삼우전리대리유한책임공사가 있다.

### 5. 실용신안, 의장, 상표관련 심판의 單審制

중국의 심판제도에 있어 실용신안, 의장, 상표관련 심판은 단심제이다.

특허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전리복심위의 결정에 불복시 인민법원에까지 갈 수 있으며 그 이유는 고급기술에 대해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중국의 심판제

도를 이해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심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응해야 할 것이다.

- 1) 특허 관련 심판 (전리복심위원회 → 인민법원)
  -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불복할 경우 지식산권국의 취소결정이나 유지결정에 불복할 경우 무효심판
- 2) 실용신안 및 의장관련 심판 : 전리복심위원회 (단심으로 처리)
  - 지식산권국의 취소결정이나 유지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무효심판
- 3) 상표관련심판 : 상표평심위원회 (단심으로 처리)
  - 상표국의 거절사정과 이의 결정에 대한 불복할 경우 재심
  - 상표국에서 등록상표의 양도를 기각하거나 갱신을 거절한데 대한 불복신청시 재심
  - 등록한지 1년이상의 상표에 대한 쟁의 사건을 재정
  - 상표의 부정한 등록으로 취소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재정
  -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결정에 불복하는 사건에 대해 재심 <계속> **발독 9903**

## 산업피해구제기금 활용안내

### 1. 지원대상

- 국 내 : 외국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로 국내산업에 피해 발생시 관련기관(무역위원회) 제소를 위해 활용한 변호사 경비
- 해 외 : 외국기업 및 단체의 덤핑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활용한 경비

2. 지원자격 : 무역업 허가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체 및 업종별 단체

3. 지원금액 : 건당 변호사 활용경비의 50% 이내, 최고 3,000만원

4. 지원시점 : 국내외 관련기관의 조사개시 이후(사후 지급)

5. 신청서류 : 산업피해구제기금 신청서, 중소기업 사실확인서, 변호사 활용계약서, 경비지급 증빙서류, 관련기관의 판정결과 사본 등

6. 문의처 : 무역협회 국제통상부 국제협력과  
(☎551-5345)